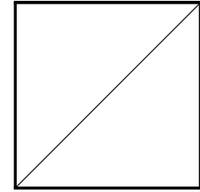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13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6. 15. (제 11 차)

의
결
사
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6. 15.

1. 의결주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바, 디폴트옵션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펀드형 디폴트옵션 편입 허용 (제12조제1항제7호)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밖에 편입할 수 없어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는 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유형으로 펀드형 디폴트옵션을 추가하기 위함.

나.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입되기 위한 기준 마련 (제8조제2호나목, 제9조제2항)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추가된 바, 가입자 보호,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으로서 증권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신용등급, 자기자본비율 등의 요건을 정하기 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2.5.17. ~ 5.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은 법 제2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자본시장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법」 제3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것

제9조의 제목 중 “종류”를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8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 방법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할은 법 제2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p> <p>1. (생략)</p> <p>2. <u>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u></p> <p><u><신설></u></p> <p><u><신설></u></p>	<p>제8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 ----- ----- ----- <u>할</u> <u>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u> <u>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자본시장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법」 제3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자기 자본비율을 충족할 것</u></p>
<p>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p>	<p>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의 운</p>

현행	개정안
<p>방법의 <u>종류</u>) ① (생략)</p> <p><신설></p> <p>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p>③ (생략)</p>	<p>용방법의 <u>종류 등</u>)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u>”이란 제8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을 말한다.</p> <p>③ -----사목의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p> <p>① (생략)</p> <p>1.~6. (생략)</p> <p><신설></p>	<p>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p> <p>① (현행과 같음)</p> <p>1.~6. (현행과 같음)</p> <p>7. <u>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u></p>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연금감독실
연 락 처	02-2100-2661	02-3145-5180